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564
----------	------

2025년 4월 29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3월 31일, 서준오 의원
2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2일
3. 상정일자 :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
(2025년 4월 29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서준오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학교 학부모회 운영 시 각급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부모회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학부모회의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(안 제8조제2항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31일 서준오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564호로 발의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학부모회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등 각급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보완하여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이 있는 자(전임 회장)도 회장으로 재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안 제8조제2항은 학부모회 회장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, 기존의 중임 제한을 받는 자도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「교육기본법」 제5조제3항¹⁾에 따르면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고, 교직원·학생·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동법 제13조²⁾는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련된

1) 「교육기본법」

제5조(교육의 자주성 등) ① ~② 생략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, 교직원·학생·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
2) 「교육기본법」

제13조(보호자) ① 생략

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③ 생략

의견을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, 학교는 이러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학부모 등의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³⁾ 및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8조⁴⁾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에 학부모 위원이 포함되면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보다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었습니다.
-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에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(이하 ‘학부모회 조례’)」를 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별개로 학부모회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 운영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⁵⁾.
- 이처럼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법정위원회인 학교운영위원회와 달리 그 설치와 운영은 동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는 위원회입니다.
-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임기 등에 대해서는 동 조례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바,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학부모회 회장의 중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.
- 한편 현재 서울 시내 학부모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,380교로 최근 3년간 회장 입후보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1.05대 1수준인바, 이는 대부분 학교에서 학부모회장 선출시 단독후보에 따른 선출이

3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~ ② 생략

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8조 ① 생략

②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.

1. 학부모위원(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 :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

2. ~ 3. 생략

③ ~ ④ 생략

5) 제2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(2015.9.18.).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」 가결.

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

더욱이 학부모회 회장은 4개 학교중 1개 학교별로 중임이 이루어지고 있고, 입후보자가 없어서 학부모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학교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⁶⁾.

[표-1] 최근 3년간(2023~2025년) 학부모회 회장 입후보 현황⁷⁾

구분		학부모회 설치 학교수	2023		2024		2025	
			입후보자 수	경쟁률	입후보자 수	경쟁률	입후보자 수	경쟁률
공립 단설유		47	46	-	46	-	47	-
초	공립	566	584	1.03:1	591	1.04:1	587	1.04:1
	사립	38	45	1.18:1	45	1.18:1	46	1.21:1
(소계) 초		604	629	1.04:1	636	1.05:1	633	1.05:1
중	공립	276	289	1.05:1	287	1.04:1	295	1.07:1
	사립	109	112	1.03:1	114	1.05:1	114	1.05:1
(소계) 중		385	401	1.04:1	401	1.04:1	409	1.06:1
고	공립	115	121	1.05:1	117	1.02:0	118	1.03:1
	사립	200	222	1.11:1	222	1.11:1	217	1.09:1
(소계) 고		315	343	1.09:1	339	1.08:1	335	1.06:1
특수	공립	11	11	-	11	-	11	-
	사립	18	19	1.06:1	18	-	18	-
(소계) 특수		29	30	1.03:1	29	-	29	-
합계	공립	1,015	1,051	1.04:1	1,052	1.04:1	1,058	1.04:1
	사립	365	398	1.09:1	399	1.09:1	395	1.08:1
총계		1,380	1,449	1.05:1	1,451	1.05:1	1,453	1.05:1

[표-2] 학교급별 학부모회 회장 중임 현황

구분		학부모회설치 학교수	회장	
			중임 학교수	비율(%)
공립 단설유		47	12	25.53
초	공립	566	151	26.68
	사립	38	7	18.42

6) 학부모회 회장직 미충원 현황 (입후보자 부족으로 회장직 선출하지 못한 현황)

구분		학부모회 설치 학교수	회장직 미충원 학교수		
			2023	2024	2025
합계	공립	1,015	3	1	3
	사립	365	1	-	1
총계		1,380	4	1	4

7)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요구자료, 735번.

구분		학부모회설치 학교수	회장	
			중임 학교수	비율(%)
(소계) 초		604	158	26.16
중	공립	276	52	18.84
	사립	109	24	22.02
(소계) 중		385	76	19.74
고	공립	115	29	25.22
	사립	200	48	24.00
(소계) 고		315	77	24.44
특수	공립	11	3	27.27
	사립	18	6	33.33
(소계) 특수		29	9	31.03
합계	공립	1,015	247	24.33
	사립	365	85	23.29
총계		1,380	332	24.06

○ 특히 현재 서울시 초·중·고 학교 중 학급수의 편차 및 학생의 규모도 각기 다른 상황⁸⁾에서 학교 규모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법규로서 학부모회장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바,

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부모회장 중임 제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.

○ 한편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권한의 집중과 학부모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할 것이나, 반대로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회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단절되고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기능 또한 병립한다고 할 것입니다.

8) 서울시 초·중·고 학교 규모 현황

단위: 명

구분		학급수	학생수
초	최소	6	160
	최대	73	1,728
중	최소	6	165
	최대	49	1,429
고	최소	9	121
	최대	48	1,357

-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임기를 제한하거나(현행 조례) 또는 제한하지 않는 것(동 개정조례안)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회장 임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바,

안 제8조는 “입후보자가 없을 경우” 라는 기준을 통해 새로운 “입후보자가 없을 경우” 에 한하여 중임 제한자가 입후보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회장 임기를 제한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해소 해소하고 있으므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8호제2항에 명시된 ‘회장이 될 수 있다.’ 는 표현을 ‘입후보가 될 수 있다.’ 로 수정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4469, 2025.4.9.).

- 그러나 입후보 등록은 회장이 되기 위한 절차적인 과정이며, 동 조항에서는 ‘회장이 될 수 있다’ 고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혹시라도 중임 제한자가 입후보 등록 이후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별도의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.
- 아울러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은 ‘입후보자’ 가 아닌 ‘회장’ 이 되는 조건을 명시한 조항으로 ‘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’ 가 아닌 ‘회장이 될 수 있다’ 로 규정하는 것이 조항의 목적 및 내용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Ⅴ. 토론요지 : 없음.

Ⅵ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Ⅶ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학부모회의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
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임원의 임기)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8조(임원의 임기) ② ----- --. 다만, 학부모회의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.